

◇ 특별 게재 ◇

보수교육지침서

제정 1983. 2. 17

개정 1983. 6. 8

협회는 회원들의 유기적인 결속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유도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구현하고자 지난 '83. 3. 17일 치과의사 보수교육지침서를 제정 하였습니다.

이 지침서는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내치과의사의 보수교육을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여 놓은 것으로서 보수교육의 미필로 법에 규정된 행정 처분을 받는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고 우리 치과의사의 품위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믿읍니다.

본 지침서에 다소 문제점과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문제점시정을 건의하고 개선하여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갈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 목 차 —

목 적
 방 침
 교육실시체계
 일반지침
 보수교육기관 및 종류
 교육면제대상
 경 비
 계획의 수립
 시 간
 승 인
 보 고
 감독 및 시간기록 관리
 교육 계획공고
 이수증 교부
 별 칙
 보 칙
 보수교육계획서 (양식)
 보수교육결과보고서 (양식)
 보수교육참석자명단 (양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양식)
 보수교육참가카드 (양식)
 보수교육이수증 (양식)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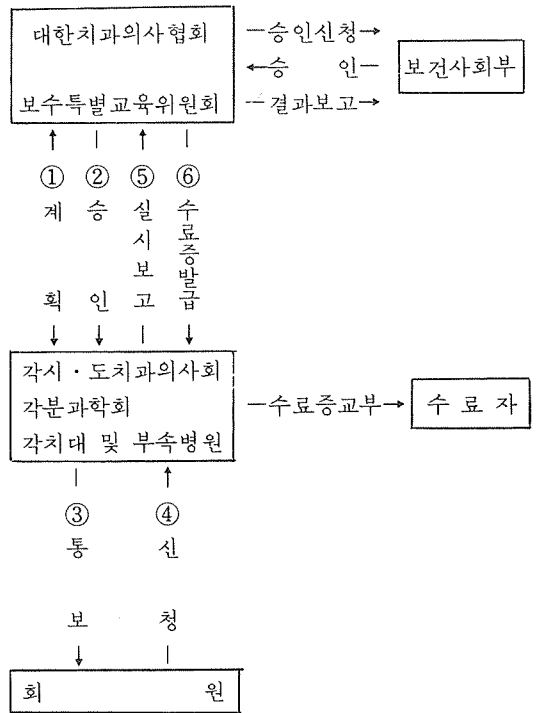
목 적

치과의사 보수교육의 목적은 평생 교육을 통하여 치과질환의 다원화에 대처하고 치의학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로서 국민구강보건향상에 이바지 함에 있다.

방 침

1.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평생교육을 유도
2. “공부하는 치과의사 상”의 부각
3. 참여자의 경비부담으로 자기발전적 주인의식부여.

교육실시체계



일반지침

1. 보수교육기관 및 종류

기 관	종 류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각시·도치과의사회	순회 치과의사 강좌
각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시청각 교육
의과대학 부속병원 치과와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전임치과의사 2인 이상)	개업의를 위한 연수 강좌 임상기초치의학강좌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기관 (보수교육 특별 위원회)	기타 각종 학술대회

2. 교육면제대상 : 교육면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한다.

- 가. 기초치의학 전공자 : 공인연구소 연구요원
- 나.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자
- 다. 군복무중인자
- 라. 전공의
- 마. 해외근무자 : 년 6월 이상 체류자

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하는 자

3. 경 비

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비보조

나. 수익자 자담원칙

4. 계획의 수립 : 보수교육 계획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거 신청한다.

가. 계획의 수립 :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장소 : 피교육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 시·도에서 실시
- 2) 교육예정인원 및 개최일시
- 3) 강사의 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시간
- 4)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 5)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나. 강사자격

- 1)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2) 2년 이상 전공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치과의사
- 3) 퇴임 조교수 이상인 자
- 4) 기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인정한 자

다. 교육방법 선정

- 1) 강의일련도 지양
- 2) 시청각 교재활용
- 3) 실습교육 장려

〈별 표〉

라. 교육내용 선정

- 1) 실제 임상분야
- 2) 최신 치의학 정보
- 3) 치과와 관련된 교양강좌(년 20% 이내)

5. 시간 : 년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참조).

6. 승 인

가. 각 교육기관은 매년 익해년도의 교육계획서를 당년 12월 말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반 보수교육은 협회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다. 교육계획의 변경 및 추가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를 제출, 교육실시 30일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 보고 : 보수교육 결과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거 보고한다.

가. 각급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일시, 장소, 제목, 연자성명,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면허번호순에 의거 교육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 3) 매 교육 실시후 15일 이내 협회에 결과보고

8. 감독 및 시간기록 관리

각 보수교육기관은 교육이수 상황을 책임있게 감독 및 기록하여 수시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 육 종 류	시 간	년 상 한
1) 피교육자		* 각시·도 치과의사회 : 7 시간
가) 보수교육특별위원회 승인사항 : 강좌	1시간 / 1시간	* 분과학회 : 총 3 시간 * 치과대학 : 총 3 시간 * 기타기관 : 총 3 시간
나)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1 회 / 3시간	* 3 시간
다) 초록발표, 구연	1 회 / 2시간	* 2 시간
라) 전시(포스터, 테이블 클리닉)	1 편 / 2시간	* 2 시간
마) 논문게재	1 편 / 3시간	* 3 시간
바) 저술(치의학 관계)	1 편 / 10시간	* 10시간
2) 교육 담당자 : 학생, 전공의 교육 및 교육 직접담당자	1시간 / 1시간	* 5 시간
3) 기타 : (1) 1 과목당 2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2) 1 일 4 과목 4 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도 치과의사회(또는 분회)의 학술대회 또는 강좌를 의무적으로 2 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9. 교육계획 공고

치의신보 및 협회지 고정란에 공고한다.

10. 이수증 교부 :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다.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 협회는 즉각 이수증을 교부한다.

11. 벌 칙

가. 보수교육 불성실기관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교육기관의 자격을 제외시킨다.

나. 1년 10시간 미 이수자는 의료법 제53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0조 벌칙을 준용할 수 있다.

12. 보 칙

가. 각 보수교육기관은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상의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건의토록 하며 협회는 최우수 프로그램을 발굴, 시상할 수 있다.

기관별추진업무

기	관	추진업무
	대한치과의사협회	1.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 승인, 시간 책정 및 평가 2. 제도적 보완(정관 보강 및 지침 수립) 3. 교재 및 신자료 4.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 안내 홍보 5. 수료증 발급 6. 보사부 정기보고
	시·도 치과의사회 각 분과학회 치과대학 및 부속병원 기 타	1. 신교재 지속적 발굴 개선 2. 교육계획수립 및 개최안내홍보 3. 자체평가 및 보고

() 년도 보수교육계획서

[별지 제 1호 서식]

일자	시간	장소	연자성명	소속	제 목	이수요청시간	교육예정인원	소요예산		비고
								지부예산	피교육자경비부담액	

기관명:

신청기관장:

①

198 년 월 일

() 년도보수교육결과보고서

보수교육참석자명단

[별지 제2호 서식]

기관명:

항 목	내 용		
	년 월 일	시 부 터	시 까 지
개 최 일 시 장 소	연 자	연 제	시 간
			교 육 내 용
참 석 인 원	명		

기관명:

면 허 번호	성 명	지 과 의 원 명	참 석 확 인 인

*참석자 명단 별첨(월회회원대장양식)

*명단은 면허번호 순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보수교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면제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 호
	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초 속 기 관			
	기관소재지			
면제사유				
<p>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주실것을 의로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대한치과의사협회 귀하</p>				
구비서류				
관계증명자료 1부				

[별지 제5호 서식]

보수교육이수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면허종별	면 허 번 호	제 호	
<p>귀하는 년도 차 의료인 보수교육 전과정을 수료하였기 의로법 시행규칙 제2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수여함.</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인			

보수교육참가카드

(전면)

보수교육참가카드

No. _____

1. 성 명 _____

2. 면 허 번 호 _____

3. 교 육 종 류 _____

4. 참 가 시 간 _____

5. 교 육 년 월 일 _____

위 사실을 확인함.

19

교육기관 인

보수교육참가카드

No. _____

1. 성 명 _____

2. 면 허 번 호 _____

3. 교 육 종 류 _____

4. 참 가 시 간 _____

5. 교 육 년 월 일 _____

위 사실을 확인함.

19

교육기관 인

*이 절편을 모아 함께 10시간이 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이수증교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이수자 소지분)

시간: 년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보관분)

* 3 항 교육의 종류에는 강좌, 협회학술대회 등으로 구분할 것.

교 육 종 류	시 간	년 상 한
1 피교육자 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승인사항: 강좌	1시간 / 1시간	* 각 시도치과의사회: 7시간 * 분과학회: 총 3시간 * 치과대학: 총 3시간 * 기타기관: 총 3시간
나) 대한치과의사협회종합학술대회 다) 초록발표, 구연 라) 전시(포스터, 테이블 클리닉) 마) 논문게재 바) 저술(치의학 관계)	1 회 / 3시간 1 회 / 2시간 1 편 / 2시간 1 편 / 3시간 1 편 / 10시간	* 3시간 * 2시간 * 2시간 * 3시간 * 10시간
2) 교육 담당자: 학생, 전공의 교육 및 교육 직접담당자	1시간 / 1시간	* 5시간
3) 기타: (1) 1과목당 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 이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2) 1일 4과목 4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 도 치과의사회(또는 분회)의 학술대회 또는 강좌를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 하여야 한다.		

의 료 법

第28條(協助의義務) ① 中央會는 保健社會部長官으로부터 醫療 및 國民保健의 向上에 관한 協助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中央會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會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補修教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③ 醫療人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第53條(資格停止등) ① 保健社會部長官은 醫療人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期間 그 免許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1. 醫療人으로서 甚히 그 品位를 損傷시키는 行爲를 한 때.

2. 正當한 事由없이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2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

3.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때.

②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依한 行爲의 範圍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醫院, 齒科醫院, 漢醫院 또는 助産所의 開設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資格停止處分을 받은 때에는 그 資格停止期間中 當該 醫療機關은 醫療業을 할 수 없다.

시 행 령

제20조(자격정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정지의 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시 행 규 칙

제2장의 2 보수교육<신설 82. 12. 31 보사령 717>

제21조의 2(보수교육)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하되 중앙회의장이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② 중앙회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다음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그 부속 병원

3. 병상 150이상을 가진 수련병원

③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의 부속 병원에서 기초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자로서 환자진료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2. 군복무중인자.

3. 전공의.

4.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당해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부의 장을 거쳐 중앙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3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 중앙회의장은 매년 1월말일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매년 3월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실시 기관별 교육 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기간

3.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4.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 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

4. 기타 보수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 하는 사항.

④ 중앙회의장은 보수교육을 받은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 3 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 4 (보수교육 실시방법등)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장이 정한다.

제21조의 5 (보수교육관계 서류의 보존)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기준령

〈제정 84. 6. 26 보사훈령 제 477호〉

제 8 조 (1월내지 3월의 자격정지 처분)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내지 3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28조 제3항 및 의료기사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 9 조 (4월내지 6월의 자격정지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월내지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28조 제3항 및 의료기사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2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제10조 (7월내지 1년의 자격정지 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내지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5.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법 제28조 제3항 및 의료기사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3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구로구 치의회, 장기 강좌실시 한강성심병원과 공동실시



〈안병근 교수의 학술강연 장면〉

구로구 치과의사회(회장 성광석)는 회원자질향상을 위한 학술강연을 지난 24일부터 실시, 앞으로

1년이상 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회 학술부(한보균이사)는 회원들의 학술적 관심과 열망에 따라 매달 비디오 강연과 더불어 원하는 회원들에게 외과 및 교정강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강사진은 한림의대 부속병원 한강성심병원 구강외과 김수남과장과 교정과 안병근교수로서 일주일에 2회(화, 토요일)에 걸쳐 오전 2시간씩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장소는 치협회관 소회의실로서 회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치협의 뜻에 회원들은 감사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구회와 대학병원간의 장기적인 교육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일로서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 치의학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바란다.

구강보건협, 포스터·글짓기 시상

최우수상 포스터 신명철 (대구중앙상고 2년) 군
글짓기 이상민 (경남장평국교 4년) 군



〈구강보건 시상식 광경〉

한국구강보건협회(김주환 이사장)가 주최한 제17회 구강보건향상 포스터,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달 27일 럭키빌딩에서 열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에 신명철(대구 중앙상고 2년)군,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에 이상민(경남 장평국교 4년)군등 부문별 입상자에게 각각 상장과 상품이 전달됐다.

동협회 김주환이사장을 비롯 치과계 인사들과 수상자 및 가족친지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포스터 부문 금상은 김국희(서울 광신상고 3년), 이상운(대구 중앙상고 1년)군이 은상에는 김용석(서울 광신상고 3년), 신동민(서울 경기상고 2년), 류태국(대구 협성상고 2년)군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입선작품 40점을 선정상장과 상품을 수여했다. 또한 글짓기 부문 금상은 송원경(경북 영주서부국교 6년)양이 은상에는 문련화(경남 동성국교 5년), 용지선(인천 석암국교 6년)양에게 각각 수여되었으며, 각각 50점, 입선작 200점에도 각각 상장과 상품이 전달됐다.

한편 동 협회는 이들 입상작품들을 순회전시하여 관계인사와 일반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국민구강보건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 럭키빌 3층 10월 27일
- 서울대 치과대학 10월 29일~31일(3일간)
- 연세대 치과대학 11월 1일~3일(3일간)
- 경기도 수원백화점 11월 7일~9일(3일간)

대치기협, 정기대의원 총회 성료

새회장엔 최총의씨 선출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아 호텔에서 제20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최총의씨, 부회장에 주화옥, 김여수, 김행일 씨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오전 11시 재적대의원 1백74명중 1백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회무보고,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회장 선거를 실시, 최총의, 문일양씨가 경합되어 투표결과 최총의씨가 87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어 8명의 입후보자가 경합을 벌인 부회장선거에선 김영근씨와 조환동씨가 사의를 표명, 이를 받

아 들이고 나머지 6명의 입후보자를 놓고 투표한 결과 주화옥씨가 1백4표, 김여수씨가 86표, 김행일씨가 77표를 얻어 부회장에 당선됐다.

또한 총회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기공실무이사로 격하 시켰던 치과기공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부회장으로 격상시켜 치과기공담당 부회장 1명을 두고 그밑에 담당이사 1명을 더 선임키로 했다.

총회는 새해 예산 7천3백여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 범위안에서 새 집행부가 각 부서별로 적절히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위임했다.